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2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맹성규·고영인·김철민

오영환 • 이형석 • 민병덕

양정숙 · 김두관 · 박성준

윤재갑 · 김영배 · 박찬대

남인순 · 이성만 · 김상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ले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1.2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
			0조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